

의안번호	제 566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4년 4월 12일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4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안전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·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위원회 비상설화 정비
 - (제10조제3항)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전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·정비

3.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: 붙임과 같음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2024. 2. 2.(금) ~ 2. 22.(목) 입법예고 20일 / 의견없음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과 같음
- 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「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[시행 2020. 8. 7.] [충청북도조례 제4436호, 2020. 8. 7., 제정]

제15조(관리 및 정비)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 설치 목적상 비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
2. 위원회의 자문, 심의·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
3.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
4. 위원회 구성·운영의 변경사항 등

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,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또는 폐지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
2.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
3.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
4. **2년 이상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**(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)
5.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

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목적·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 : 감사관 안병대